

정관

2023 년 3 월 24 일

주식회사 TCC 스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사는 주식회사 티씨씨스틸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CC STEEL CORP.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하기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석도강판 및 표면처리강판의 제조와 판매업
2.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 알루미늄판의 임가공과 판매업
3. 금속인쇄업
4. 철강구조물, 기계, 플랜트 제작 및 판매업
5. 전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6. 창고업
7.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ccstee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 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총수 및 일주의 금액)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하며 일주의 금액은 금일천원으로 한다.

제 5 조의 2 (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 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5 조의 3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이내 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의 4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5 조의 5 (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육백만주 이내로 한다.
- ② 전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하거나, 주주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권을 청구하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전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 주당 보통주식 1 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이상의 범위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 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이상 10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내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 ⑤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8 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전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 5 조의 6 (상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육백만주 이내로 한다.
- ② 상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거나, 주주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월 이상 10 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 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⑤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상환한다.
- ⑦ 제 5 조 5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5 조의 7 (상환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우선주 발행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상환전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육백만주 이내로 한다.

- ② 상환전환주식에 대한 우선 배당기준은 연배당률 1%부터 10%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상환과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5조5의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5조6의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 ④ 상환전환주식의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및 기타권리의 구체적인 조건, 내용, 범위, 행사절차, 효력 등 기타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 6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7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5 조의 2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9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1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2 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2 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 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으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9 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4 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역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의 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 (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 21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2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 26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1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본 회사의 감사는 3 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 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이사 선임시 상법 제 38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6 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정관 제 26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한다.

제 30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중에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의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 조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직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4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회일 2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8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0 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1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4 조의 2(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07 월 01 일 0 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5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52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0 년 3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 조 개정내용은 2010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53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1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54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 제 32 조의 2, 제 33 조, 제 37 조, 제 42 조, 제 44 조의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55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56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61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 조, 제 9 조, 제 12 조의 3 및 제 13 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62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63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64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 65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